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 인 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9에서는 관광사업자, 관광 관련 사업자, 관광 관련 단체,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대표도시인 서울특별시에는 현재 서울시 지역관광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.
- 따라서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서울시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, 서울시 내 관광산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지역 관광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

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